로스쿨 학생들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의 구조*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에 의한 도출—

이상수**

목 차

Ⅰ. 도입
Ⅱ. 연구방법
Ⅲ. 연구과정
Ⅳ. 연구의 경과
Ⅴ. 연구의 시사점
Ⅵ. 연구의 한계

[국문 요약]

본고는 로스쿨제도 하에서 법사회학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의 연장에서, 로스쿨 학생들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려는 시도이다. 교육이 반드시 학생들의 요구에만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을 도외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로스쿨에서 법사회학 강의를 설계하려는 교수들에게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 이 연구는 2009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200916007.01).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사회학회 회원

본고에서 채택한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이다. 즉, 학생들이 법사회학과 관련하여 가진 체험에 관한 조사결과를 일차적인 자료로 하여 이로부터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의 구조를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도출된 결론은 다시 학생들에게 회람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 학생들 사이에는 법사회학 강의의 지향점, 교육방법 등에서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에 관한 일관되고 단일한 구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법현상에 관한 비판적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야 말로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로스쿨 학생들이 직업적 관심에 매몰되어 실용적 지식만 추구할 뿐 추상적・비판적 법 이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여러 예측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섣불리 일반화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회학 강의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데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법사회학, 강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Ⅰ.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의 양성제도가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1회성 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을 선발하던 시대를 뒤로 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법학교육도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로스쿨법의 통과 이후 이를 둘러싼 수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들이 행해지고 있다. 법학교육에서 변화의 큰 방향은 무엇보다 법학의 실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실무교육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이론법학의 경우에도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론을 과감히 청산하고 실제 법률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데 직접 도움이 되는 실용적 내용이 교육의 전면으로 나서고 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법학교육의 대상자 면에서도 큰 변화를 낳았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을 신입생으로 받던 법과대학과 달리, 로스쿨은 학부에

서 다양한 전공의 학문을 수련한 우수한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받고 있다. 그중의 상당수는 이미 전문영역에서의 사회경험을 한 사람들이다. 이들 입학생의 평균연령은 30세를 넘나든다. 이들은 학부전공과 사회경험에 덧붙여 법학을 학습함으로써 장차 전문화된 법조인이 된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변호사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긴박하고 현실적인 요구는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더욱 실용적인 것으로 만드는 동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로스쿨 시대에 기초법학의 역할은 무엇인지가 모호해진다. 아니 도무지 로스쿨에서 기초법학의 역할이 존재하기나 한 것인가를 재검토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은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로스쿨에서 추상적 사변을 일삼을 여지가 있겠느냐는 생각에 근거한다. 이러한 우려는 기초법학을 담당한 법학교수들 사이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견되고, 그와 관련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예컨대 김도현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자칫 기초법학의 붕괴 내지 대폭적인 위축을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기초법학이 학문으로서 유용성이 없지 않으며 로스쿨 시대에 들어서 더욱 그 수요가 증대되고 그 가치를 발휘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1] 특히 법사회학은 실정법학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2] 말하자면 법사회학도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법학의 실용화에 일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봉진도 마찬가지로 로스쿨 시대의 기초법 교육은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변호사시험과목과 무관한 학문방향이 아니라 판례에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 로스쿨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기초법의 심도 깊은 문제제기와 해결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법적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제안하고 있

1) 김도현, 「실무법학교육과 기초법」,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올바른 로스쿨 정착을 위한 후속과제 국민대토론회』 자료집(2007.7.20). 110면, 115면.

2) 김도현, 위의 글, 114면.

다.[3] 고봉진의 문제의식도 김도현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로스쿨에서의 기초법학이라면 로스쿨제도와 학생의 요구에 맞추어 법률문제의 실무적 해결능력의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무릇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로스쿨 시대를 맞이하여 실용성을 갖추지 못한 법적 지식은 퇴조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 따라서 기초법도 실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보인다. 아무튼 로스쿨 시대에 법사회학을 포함한 기초법학은 중대한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염두에 두면서 로스쿨에서 법사회학 강의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는 반드시 위에서 제시된 견해를 논박하거나 보강하기 위한 의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고의 의도는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가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드러내보려는 것이다.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는 한 두 측면에 대해 검토하기보다는 논의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고는 로스쿨에서의 바람직한 강의의 구조를 찾음에 있어서, 로스쿨 학생들의 요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로스쿨에서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는 로스쿨 학생들의 현실과 요구를 무시하고는 모색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의미 있다고 하겠다. 물론 위에 거론한 두 연구도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들은 로스쿨에서 학생들의 요구는 실용성의 강화에 있음이 틀림없다고 일응 전제하고 있다. 그에 비추어 본다면 본고는 경험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좀 더 정교하게 살펴보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자료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현실적합적인 법사회학 강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봉진, 「기초법의 교수방법론」, 『법철학연구』 11-2(2008). 295면.

Ⅱ. 연구방법

1. 질적 연구

질적 연구이든 양적 연구이든 모두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며 지식을 생산하고 습득하는 방법이다. 다만 그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어떻게 다른가? 질적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률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4] 여기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되는 한에서 양적 연구와 대비하여 질적 연구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본다. 질적 연구는 대체로 가설이 없는 연구에서 이용되는 반면 양적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즉 질적 연구는 "객관과 데이터에 따라 어떤 현상을 '외부로부터 설명'하려는 계량적 접근방법에 반해서, '내부로부터 이해'하려는 기술적(descriptive) 접근방식"[5]이다. 질적 연구는 많은 변수가 개입되는 소수의 사례에 집중하고, 양적 연구는 소수의 변수를 많은 사례에 적용해 본다.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과의 공감을 통해서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반면, 양적 연구는 외부에서 들이대어진 잣대를 이용하여 대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두 접근법 중 어느 방법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하고 유용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연구의 목적이나 대상 또는 연구자의 개성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6] 본고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4) 질적 연구의 특징적 요소로는 자료의 원천으로서 자연스러운 상황, 자료수집의 주요도구로서의 연구자, 말 또는 그림으로 수집되는 자료, 산물이라기보다는 과정으로서의 결과물, 특별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귀납적으로 자료를 분석, 참여자들의 관점과 그들의 의미에 초점, 표현적 언어의 사용, 논리에 의한 설득 등이 거론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견해의 일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존 크레스웰, 조흥식 등 옮김, 『질적 연구방법론』(학지사, 2005), 33면).

5) 신충식, 질적 연구방법과 현상학, 『사회과학』 42-1(2009), 86면.

6) 질적 연구를 이용하는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거론된다. 첫째 연구문제의 특성 때문에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주제가 탐색될 필요가 있을 때 질적 연구를 선택한다. 셋째,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활용한다. 넷째, 그들이 처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연구하기 위해 질적 접근을 선택한다. 다섯째, 문학

법사회학 강의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방적인 방식으로 조사하여 서술하려는 것인 바, 이 경우는 질적인 접근법이 더 유용해 보인다. 특히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임의적으로 변수를 조작하기보다 연구대상을 선입견 없이 바라봄으로써 의미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포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선입견이 가급적 배제된 객관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2. 현상학적 연구

질적 연구는 그 내부에 여러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 크레스웰은 그 전형적인 것으로 전기적 생애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를 들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7] 각각은 서로 다른 이론적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연구목표나 연구방법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8] 본고는 그 중에서 현상학적 연구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상학적인 질적 연구란 어떠한 이론적 전제들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접근법은 어떤 유용성을 갖는가?

현상학은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론이다. 후설은 진리회의주의와 상대주의에 반대했으며, 동시에 과학주의와 실증주의에

적인 표현으로 글을 쓰는데 관심이 있을 때 질적 접근을 선택한다. 여섯째 현장에서의 오랜 자료수집과 '맥락' 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분석에 쓰일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있을 때 질적 연구를 채택한다. 일곱째, 독자들이 질적 연구에 대해 수용적이기 때문에 질적 접근을 선택한다. 여덟째, 적극적인 학습자로서의 연구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질적 접근을 채택한다(크레스웰, 앞의 책(각주 4), 35-36면).

7) 크레스웰의 앞의 책은 이러한 접근법 간의 차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8) 이론적 전제가 어떤 방법론상의 차이를 낳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은 Uwe Flick,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 2002), p.16 이하; J. Amos Hatch, 진영은 옮김, 『교육상황에서 질적 연구 수행하기』(학지사, 2008), 35면 이하를 참조하라.

도 반대했다. 좀 더 단호하게 말하면, 현상학적 진리관의 가장 근원적인 동기는 설득력 있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라 할 수 있다.[9] 그는 진리나 본질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경험적 자료의 단순한 집적과 체계화를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학주의자 내지 실증주의자와는 달랐다. 동시에 진리를 확고한 근거 위에 정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으려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이다. 요컨대 그의 현상학은 경험적 세계에 근거를 두면서 본질을 추구하는 이론이었다. 아래에서 그의 방법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1) 진리의 확고한 근거로서의 생활세계

현상학은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 객관적인 진리는 반드시 생활세계(life world)에 근거해야 한다. 생활세계는 지각을 통해서 실제로 주어진 세계이며,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이다.[10] 현상학에서 생활세계는 객관적 진리가 그 진리성을 의거하는 유일한 실제의 세계이다. 생활세계는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의식에 떠오른 세상이며, 그런 만큼 생활세계는 주관적-상대적인 세계이다. 생활세계는 상대적이지만 그 상대적인 영역 내에서는 일정한 진리성을 가진다. 현상학은 전제 없는 철학으로서, 생활세계를 대면할 때는 어떠한 선입견도 개입시키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생활세계를 파악할 때 현상학은 의도적인 판단중지(epoche) 내지 괄호치기(bracketing)를 통해서 생활세계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인식하고자 노력한다.

---

9) 신충식, 앞의 글(각주 5), 87면.
10) 신충식, 앞의 글(각주 5), 102면.

2) 지향성이 개입된 진리

현상학은 생활세계의 상대적 진리에 만족하지 않고, 보편적 객관적 진리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것은 생활세계를 초월하려는 동기에 의해서 추동되는 학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상학은 초월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초월학문은 미리 주어진 생활세계 안에서 주관적 구성물로 주어지는 존재의 감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해서 과학 이전에 경험하는 삶의 성과물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11] 현상학은 확고한 기반이 되는 생활세계의 토대 위에서 직관을 통해서 사태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바로 여기가 실증주의와 결별하는 지점이다. 즉, 현상학은 실증주의와 달리 직관을 통해서 의미와 본질의 세계로 도약하는 것이다. 죠르기(Giorgi)는 현상학은 "참여대상자가 경험한 현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12]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과연 직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직관을 하는 주체의 가치관이나 주관이 사태를 왜곡시키지 않겠는가? 현상학은 인식주체의 개입에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그 주체의 적극적인 개입이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본다. 현상학은 인식주체로부터 분리된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인식주체의 의도성 내지 지향성(intentionality of consciousness)과 결부된 객관적 진리를 도모한다. 직관을 통해서 생활세계를 초월하게 하는 동기는 지향성이다. 즉,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초월하고자하는 의도가 발생하고 실제로 의미 있는 초월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하는 경우, 연구자에게는 "교육자로서 상황의 교육학적 의의를 평가하는 법을 아는 실천적 기민함"이 있어야 한다.[13] 교육자로서의 지향성을 갖는 경우와 교육행정

11) 신충식, 앞의 글(각주 5), 93면.

12) Amedeo Giorgi, (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uquesne Univesity Press, 1985), 고미영,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서술」, 『한국사회복지학』 56-1(2004. 2), 77면에서 재인용.

가로서의 지향성을 갖는 경우에 동일한 현상이라도 그 파악된 본질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이처럼 현상학에서는 인식된 세계와 인식하는 사람이 상호 의존하고 있다. 연구자와 연구자의 세계가 불가분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14] 이렇게 본다면 현상학에서 말하는 객관적 진리의 의미가 재정의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현상학에서 객관적 진리란 무조건적 진리라기보다는 초월론적 삶의 특수한 양식에 그친다.[15] 현상학에서 직관을 위한 명료한 의도성은 단점이라기보다 미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상학은 진리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내적 논리를 제공한다.

3) 지속적인 성장과정으로서의 현상학

이렇게 볼 때 현상학은 현상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면서 일정한 관점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얼핏 보아 그다지 신선함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상학은 우리를 본질로 이끄는 깊은 함의를 갖는다. 무엇보다 강조할 만한 것은 현상학에서 말하는 직관과 초월은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상학은 일회적인 직관을 통해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현상학에서 객관적인 진리는 하나의 과정이고 도정이다.

현상학에서 말하는 직관은 성찰을 의미한다. 즉 깊은 사색을 통해서 사태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성찰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것이다.[16] 직관을 통해서 얻어진 사태의 본질은 그것이 과연 사태의 본질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의 검

13) van Manen, 1994, 124면, 유혜령, 앞의 글, 43면에서 재인용.
14) 유혜령, 「교육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의 성찰과 연구기법의 문제」, 『아동교육』 18-1(2009), 43면.
15) 신충식, 앞의 글(각주 5), 102면.
16) 유혜령, 앞의 글(각주 13), 40면.

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생활세계의 단순함과 확고함으로 되돌아가는 순환운동적 사색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쓰기의 면에서 표현하자면 현상학은 끊임없는 고쳐쓰기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다면 자칭 '초월'은 심리주의 내지 주관주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현상학이 과학을 자칭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반복적인 사색과 성찰을 통해서 진정한 상호주관성에 도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상호주관성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혹자가 "초월철학은 항상 '불가해성'(incomprehensibility)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다"[17]고 했을 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색과 노력의 과정은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의 세계를 드러낼 것이며, 동시에 그 "연구자의 성찰과 해석력"을 증가시킬 것이다.[18]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현상학은 "성찰과 해석력"이 없는 사람은 접근하기 힘든 학문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함부로 현상학적 방법을 동원했노라고 거들먹거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현상학의 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현상학의 성패는 생활세계의 단순함과 직접성 그리고 상대성을 직관을 통해서 초월하고자 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깊은 성찰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상호주관성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현상학은 고집스러운 독백에 그치면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상학은 사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로부터 공감할 만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과정이다.

3. 현상학과 질적 연구

현상학의 이론틀은 질적 연구를 위한 기반이 된다. 현상학이 질적 연구의 방

17) 신충식, 앞의 글(각주 5), 94면.
18) 유혜령, 앞의 글(각주 13), 40면.

법론으로 채택될 때 그것은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the phenomenon)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live experience)의 의미를 기술한다."[19]

> 이러한 현상학적 체험연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체험의 의미 파악을 목표로 한다. 현상학에서 모든 질적 연구방법의 출발점은 일상 체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학문의 고유한 연구는 일상체험의 소박함에서 그 방법론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0]

이처럼 질적 연구와 관련하여 현상학은 언어로 표현된 일상체험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21]

본 연구는 이상에서 살펴본 현상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로스쿨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연구는 "로스쿨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의 본질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현상학적 방법을 쓴다는 의미는 선입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로스쿨 학생들의 생활세계를 기술하고, 그로부터 현상의 본질구조를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의 성패는, 앞에서 보았듯이, 얼마나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하여 설득력 있는 상호주관적 진리를 도출했는지에 달려 있다.

---

19) Cresswell, 앞의 책(각주 4), 76면.

20) 신충식, 앞의 글(각주 5), 109면.

21) 예컨대, 고미영은 "아동학대라는 현상에 대해 그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생활세계에서 자료를 얻고, 아동들의 상호주관성을 통하여 본질구조로 파악하는 일련의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학대 경험에 대한 아동들의 내면세계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고미영, 앞의 글(각주 12), 73면.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도 현상학적 방법이 이용되었다(김성훈, 신주화, 하정미,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노년학』 30-1(2010)).

Ⅲ. 연구과정

1. 참여자[22]

질적 연구가 반드시 일반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가 일반적으로 도모할 만한 법사회학강의 형태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일반성의 추구라는 덕목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특히 연구참여자군을 구성할 때는 이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다시 말해 연구참여자군을 구성할 때는 일반성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질적 연구의 장점을 활용한다는 두 지점을 모두 염두에 두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모두 로스쿨의 재학생들로서 법사회학과 관련한 체험이 있는 학생들이다. 법사회학과 관련하여 체험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법사회학 과목을 수강했다는 의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사회학의 수강신청을 했지만 폐강 등의 사유로 실제 수강하지 않은 학생도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연구참여자가 된 학생들은 여러 학교에 분산되도록 했다. 수도권의 4개 로스쿨 소속 학생과 지방의 1개 로스쿨 학생이 참여자에 포함되었다. 각 학교별로 2-3명이 참여했으며, 많게는 5명이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는 남자 9명, 여자 5명으로 모두 14명이었다. 전기적 생애사 연구가 1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통상 10명 전후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즉,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는 10명 정도의 서로 다른 사람의 체험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구조가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그것을 탐구한다. 본고에서도 애당초 각 학교별로 2명씩으로 하여 모두 10명을 조사하기로 의도했으나 연구과정에서

22)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체험을 단순히 즉자적으로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고 발언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자' 또는 '피조사자'라는 표현보다는 '참여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이하에서도 참여자로 통일했다.

의도하지 않게 그 수가 증가하여 14명이 된 것이다.

각 학교별로 참여자를 선정할 때는 각 학교의 법사회학 담당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담당교수에게 적절한 참여자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할 때, 다소 진지한 학생이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언질을 주었다. 각 로스쿨의 담당교수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며 추천되어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진지하게 참여했다. 연구참여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구성

참여자	소속 로스쿨	연령	성별	법사회학 수강여부	비고
1	A	24	남	수강중	함께 인터뷰 실시
2	A	28	여	수강중	
3	A	29	여	수강중	
4	A	30	남	수강	함께 인터뷰 실시
5	A	30	남	수강	
6	B	29	남	수강	
7	B	28	남	수강	
8	C	28	남	수강	
9	C	35	남	수강	인터뷰 실시 못함
10	D	26	여	미수강	규격화된 설문지에 의한 조사는 없었음
11	D	31	남	미수강	
12	E	34	여	수강	
13	E	36	남	수강	
14	E	30	여	수강	인터뷰 실시 못함

2. 자료의 수집

참여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두 단계로 실시했다. 첫째 단계는 설문지에 의한 조사였고, 둘째 단계는 면접인터뷰를 통한 조사였다.

설문지에 의한 조사는 연구자가 개방형 질문을 하는 식으로 실시했다. 설문지에는 설문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내용,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는 부분, 그리

고 비밀보장문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설문지 원본은 본고의 말미에 첨부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거의 2-3쪽 분량으로 답해 주었는데, 때로는 5-6페이지에 이른다. 애당초는 면접인터뷰만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인터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뷰 전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후에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설문지가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사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설문지만 받은 경우도 두 건이 발생했다.

면접인터뷰는 참여자 각각을 직접 만나서 각자의 체험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어떤 경우는 2-3인이 함께 토론하듯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경우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에 인터뷰를 실시했기 때문에 인터뷰는 설문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심이었으며,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질문은 일부 포함되는 정도에 그쳤다. 면접인터뷰는 보통 30-40분이 소요되었으며, 짧게는 15분이 걸린 경우도 있고, 길게는 1시간 이상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면접인터뷰 내용은 모두 필사하여 읽어 보았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면접인터뷰는 그 내용을 필사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질적 연구에서 기대되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아마도 이는 연구참여자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당수준의 지식인들로서 이미 추상적인 사고에 능숙한 사람들이어서 서면만을 통해서도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면질의에 이은 면접인터뷰는 그다지 새로운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이 자료의 수집과정이 다소 비일관적이지만, 본 연구의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어떤 형식에서든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부족하지 않게 표출할 수 있었고 또 표출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일관성의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일관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은 연구참여자들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그것을 차근차근 읽는 것에서 시작했다. 여러 차례 읽는 과정에서 주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추출했다. 다음으로 주요 진술의 의미(meaning)를 도출하고, 도출된 의미를 분류하고 재배치하여 주제군(cluster of theme)을 도출한다. 이어 이를 종합적 진술(exhaustive description)의 형태로 진술했다.[23] 종합적 진술은 본 연구가 도출한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의 본질적 구조이다.

하지만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논리적 순서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주요 진술의 정당성을 확인하거나 추출된 의미가 진술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집된 자료로 회귀해야 했다. 또 도출된 주제군을 추출하기 위해서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종합적 진술이 도출된 뒤에도 이를 수집된 자료나 주요 진술에 비추어 과도한 해석이나 일탈이 없는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역의 고찰도 있었다. 예컨대 주요 진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후의 의미추출 과정이나 주제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4. 검증

최종적으로 도출된 "종합적 진술"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회람시킴으로써 검증절차를 거쳤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상호주관성이라는 차원에서의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구자가 자신

23) 이러한 순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Doris J. Reimen, 「돌봄(caring) 상호작용의 본질적 구조: 현상학적 연구 수행하기」(조홍식 등, 앞의 책, 326면 이하 참조)에서 전형적으로 이러한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의 모든 "성찰과 해석력"을 동원하여 연구대상의 본질구조를 도출했노라고 자신하더라도 정작 연구참여자들이 그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의 진리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 진술의 본문 부분을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것이 연구참여자 각자의 진술과 합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식으로 검증을 실시했다. 연구참여자 14명중에서 10명이 답신을 보내왔다.

답신의 내용을 보면 10명중 9명은 종합적 진술의 내용은 자신들의 진술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수정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1명은 전체적으로 모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수업부담과 관련하여 수업이 가볍기보다는 조금은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다. 검증을 시작할 때 원래 의도는 연구참여자들의 코멘트를 받아서 일부 개선할 생각이었지만, 그대로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수정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수정을 가급적 하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수업부담과 관련한 한 학생의 이견은 최종진술에서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본 연구에서 정리된 종합적 서술은 학생들의 생각을 상당정도 정확히 반영했다고 하겠다.

Ⅳ. 연구의 경과

1. 주요진술

연구의 첫 작업은 주요진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설문지와 인터뷰 기록을 세세하게 읽어보았다. 아래의 표에 열거된 주요진술에는 진술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과정에서는 주요진술에 진술자를 표시해 두었다. 이는 주요진술의 맥락을 추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진술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번만 기록했다.

〈표 2〉 주요진술들

1.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드러내는 학문	33. 현대 이론가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
2. 법사회학은 사회과학, 법철학은 형이상학	34. 법사회학적으로 중요한 개념, 쟁점을 이해해야
3. 법사회학은 현대적인 학문	35. 교재개발
4. 사회학적 방법으로 법을 연구하는 것.	36. 택스트 암기에나 매진하는 그런 무의미한 일상
5. 법학에 대한 조망기회	37. 실정법학의 도망갈 길 없는 답답함
6. 법이 이 사회에서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	38. 사유의 공간
7. 우리사회의 현상들을 법적으로 재해석하고 대안을 제시	39. 통찰력 있고 열려있는 사고를 가진 법대생
8. 법이라는 사회현실을 사회사상과 사회이론을 통해 성찰	40. 나무만 보다가 숲을 놓치는 어리석음
9. 사회이론과 법의 관계를 메타적으로 성찰하는 것	41. 사회속에서 법이 무엇을 하는지 바라보게
10. 법과 사회의 연결지점을 고민하는 학문	42. 강압적인 법의 모습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발견
11. 법의 한계고찰	43. 실정법에 대한 비평적인 자세
12. 복잡다기한 사회현상의 법적 고찰	44. '한국'의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해보려는 시도
13. 토론을 통하여 깊은 고민을 하는 시간	45. 사회와 격리되어 상아탑 속에서 공부하는 전공
14.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나눌 수 있는 과정	46. 실제 사회이슈들을 법률적으로 생각
15. 열려있는 가능성	47. 현재 법현실을 이해
16. 하나의 현상에 대한 다양한 논거	48. 대중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17. 교수와 학생간의 수평적인 관계 유지	49. 모든 수업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쉬웠다
18. 둘러앉은 형태의 수업	50. 사회적 상상력
19. 교양과 소통능력의 함양	51. 판례를 통한 연습
20. 사고의 훈련	52. 법원방청
21. 사고의 기초를 튼튼히	53. 법학도가 아니라 사회의 상식의 눈
22. 보고서는 사고를 정리하는 역할	54. 실정법과 기초법의 균형
23. 보고서의 일방적 제출과 평가는 곤란	55. 법전과 답안작성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24. 자신만의 가치관을 성립	56. 시간이 부족
25. 개관하는 강의	57. 혼자만의 자유로운 사색
26. 지나치게 피상적 강의는 곤란	58. 새로움과 참신함
27. 사회적 현상과 사회의 요구에 무감각해지는 경향의 극복	59. 다른 방향으로 가지를 뻗을 수 있는 여지
28. 실무적 지식 및 능력이 배양	60. 좀 덜 법학스러운 것.
29.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인문학적 소스	61. 로스쿨진학 동기를 점점 잃어가는 느낌
30. 진정한 법학	62. 사회에 대한 관심을 환기
31. hard case를 풀기 위해서	63. 너무 깊이하면 곤란할 것이다
32. 법과 권력 사회 '삼면관계'에 대한 생각	64. 교양처럼 편하게 들으려고 들었고
	65. 좀 가볍고 재미있게
	66. 수업부담 경감
	67. 법공부에 활력소

2. 의미들

의미는 각각의 주요진술이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추출하는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주요진술보다는 그 수가 적다.

〈표 3〉 주요진술들로부터 형성된 의미들

1. 법사회학은 사회와 소통하는 학문이다
2. 법사회학은 법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3. 좋은 법사회학 교재가 필요하다
4. 법사회학의 개념과 쟁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5. 법사회학은 법과 사회 간의 연결지점에 대해 설명한다
6. 법사회학은 다양한 현대 이론가들에 대해서 다룬다
7. 법사회학은 법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8. 법사회학 강의는 사고의 훈련을 제공한다.
9. 법사회학은 실무능력을 제고한다
10. 실정법상의 hard cases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사회학이 필요하다
11. 법사회학을 하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12. 법사회학은 법학적 상상력의 제고에 도움이 된다.
13. 법사회학은 법학에 희망을 줄 수 있다
14. 법사회학은 법의 사회적 순기능도 보여준다.
15. 법사회학은 교양적 의미도 갖는다
16. 법사회학은 법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극복하게 하는 과목이다
17. 법사회학은 사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과목이다
18. 법사회학은 기존 법학의 왜곡된 시각을 건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19. 법사회학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길러준다
20. 법사회학은 법의 한계에 대한 지식을 준다
21. 법사회학은 예비법조인의 실존적 문제를 취급한다
22. 법사회학은 법학 전체에 대한 일정한 조망을 제공한다
23. 법사회학을 통해서 사회현실을 더 잘 알 수 있다
24. 법사회학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법을 조망할 수 있게 조력한다
25. 법사회학은 실제 우리나라 현실을 다룬다
26. 교수는 호기심이 나는 현실의 소재를 발굴하려고 노력한다
27. 법사회학 수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
28. 판례를 수업의 소재로 이용한다면 일석이조이다
29. 법사회학이 현장 참여를 포함한다면 좋다
30. 법사회학 강의에서 관련 학자들의 견해를 적용해 본다
31. 레포트 작성과 제출은 교수와 학생간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에 소통과 상호작용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
32. 법사회학은 학생들이 열려있는 사고를 하도록 돕는다
33. 법사회학은 토론을 통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34. 법사회학은 학생들의 소통능력을 제고하는 과목 중의 하나이다
35.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생각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유익하다
36. 법사회학 수업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여준다
37. 법사회학 수업에서 다른 학생의 견해를 청취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있다
38. 법사회학은 개방적인 토론의 장이다.
39. 교수도 학생과 대등하게 토론에 참여한다

3. 주제군

의미들을 그 내용에 따라 강의목표에 관한 것, 강의내용에 관한 것, 강의방

법에 관한 것으로 주제군을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서의 의미가 좀 더 체계화되고 추상화되었다. 주제군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4〉 공통적인 주제군

1. 법사회학 강의의 목표
   a. 실정법 또는 실정법학의 한계를 직시하게 한다.
   b. 법사회학은 '한국'의 법현실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c. 깊은 성찰적 사고를 통해 유연성, 통찰력, 소통능력을 제고한다.
   d. 전체로서의 법 자체에 대한 각자의 개인적 견해를 정립하도록 조력한다.

2. 법사회학 강의의 내용
   a. 현실을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법사회학 이론을 제공한다.
   b. 다양한 이론을 한국의 법현실에 적용해 본다.
   c. 주요한 사건, 현장참여, 판례 등을 통해서 한국의 법현실을 분석해 본다.

3. 법사회학 강의방법
   a. 학생들 간의 토론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강의방법이다..
   b.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깊은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 사이의 소통의 매체이다.
   c. 교수의 주역할은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는 이론을 쉽게 설명해주어야 하며 토론에 적합한 좋은 소재를 개발해야 한다. 교수의 견해가 수업시간에 많이 드러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d. 법사회학 강의는 과도한 수업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4. 종합적 서술

이상의 작업을 거쳐 로스쿨 학생들의 법사회학 관련 체험에서 드러난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의 본질적인 구조"를 도출해 보았다. 위에서 학생들의 설문은 강의목표, 강의내용, 강의방법의 면으로 주제군을 분류하였거니와 각 주제군별로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종합적 진술

1. 강의목표는 한국사회의 법현실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2. 강의내용은 한국사회 법현실의 이해에 필요한 이론의 학습과 이를 이용한 한국사회 법현실의 분석이다.
3. 강의방법은 토론을 매개로 한 학생들의 참여적 수업이다.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히 풀어서 서술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로스쿨에서 법사회학 강의의 성격은 로스쿨 학생들이 처한 현실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밖에 없다. 현재 대다수의 로스쿨 학생들은 방대한 양의 실정법의 이해와 습득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법조문과 판례를 기반으로 한 도그마를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들에게 변호사시험에의 합격이 당면의 최대과제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비판보다 순응이, 창조력보다 암기력이 자연스럽게 선호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법을 물신화하게 되고, 사고의 고착화, 경직화, 보수화과정을 겪게 된다.

법사회학 강의는 이러한 현실로부터의 일정한 탈출을 도모한다. 법사회학 강의는 실정법학의 테두리에서 한걸음 떨어져 나와서 법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시간이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실정법의 학습과정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롭고도 생생한 지식과 비전을 얻게 된다. 예컨대 법에는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도 있음을 알게 되고, 법의 강제성 못지않게 법의 한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실정법을 절대시하는 태도도 누그러진다. 이처럼 법사회학 강의는 새로운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는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법에 관한 학생들의 시야를 확대하고 그 인식을 심화시킨다.

법사회학 강의의 실제 내용은 사회사상과 사회이론에 대한 학습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론학습은 법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법사회학 강의에서 이론학습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사회학 강의에서 제공되는 여러 이론은 실제 현실, 특히 한국사회의 법현실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도구적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학습에서는 언제나 그 이론의 현재적 의미가 함께 다루어진다. 물론 때로는 법사회학 강의에서 사전의 이론학습 없이 직접 구체적인 사회현상을 분석해보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한층 더 자유로운 상상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법이야 어쨌든, 법사회학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사회이론 자체의 습득여부가 아니고,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법과 현실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고 깊은 성찰을 경험했는지 여

부이다. 이는 법사회학 강의목표가 특정 견해의 주입에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납득할 수 있다.[24]

이상에서 보듯이 로스쿨에서 법사회학 강의의 본질은 한국사회의 법현실에 대한 성찰적 인식의 심화를 도모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 법조인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이라는 실존적 고민의 해소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볼 때 법사회학은 법조문에 대한 지식을 쌓는 실정법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겠다.

법사회학 강의가 실정법 강의와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것의 실용적 의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법사회학 강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법사회학 강의는 실정법이 운용되는 사회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법의 운영에 필요한 법 외적 지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법사회학 강의는 다양한 사고를 접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적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고의 유연성, 통찰력, 현실감각, 소통능력을 길러준다. 이러한 지식과 소양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hard case)의 해결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법사회학은 복잡 다양한 법의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법학도에게 법학을 제대로 하게 하는 동기와 비전을 제공한다. 이처럼 법사회학은 당장의 법률지식을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법학도에게 도움을 준다.

강의방법과 관련하여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은 토론이다. 법사회학 강의에서 토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토론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하며 그 응용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토론은 법에 관한 각자의 생각을 더욱 정치하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토론

24) 미국의 소위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에서 "사례는 법적인 추론(legal reasoning)을 훈련시키기 위한 '수단(means)' 나 '도구(tool)'에 불과할 뿐, 유권적법해석으로서의 판례의 가치는 크지 않다"라고 하는데(김재원,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방법: Case Method에 관한 오해와 이해」, 『법철학연구』 9(2), (2006), 76면.) 마찬가지로 법사회학 강의도 지식의 전달보다도 지식의 주체적 인식과 지식의 생산능력의 제고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 의미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는 수강학생의 구성이 다양한 것이 좋다.

법사회학 강의에서 교수는 토론의 촉진자(facilitator)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토론을 위한 좋은 소재를 발굴하는 것이다. 유능한 교수는 학생들의 관심을 즉시 유발할 수 있으면서 법사회학적으로 의미 있는 생생한 소재를 발굴하여 제공한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문제되는 큰 사건, 법원 판례, 또는 실제 현장(예컨대 법정방문) 등이 이용된다. 토론은 학생들이 주도하며 학생들 간의 토론을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교수는 토론과정에서 가급적 발언을 자제한다.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때에는 학생과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한다. 다만 교수는 토론이 지나치게 방만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토론이 내실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이론이나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것도 교수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 교수는 적절한 교재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정리하고 토론의 의미에 대해서 코멘트 하는 것도 교수의 역할이다.

토론과 더불어 보고서(report)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유력한 강의도구가 된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강력한 도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교수-학생 사이의 소통의 매개체이며 동시에 그러한 소통의 결과물일 때 가장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수업부담의 면에서, 법사회학 강의는 로스쿨학생의 현실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과도한 수업부담을 주지 않는다. 법사회학 강의는 의욕적 학생에게 심도 있는 학습의 길을 열어주지만, 모든 수강 학생에게 깊은 연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사회학 강의는 다소 가벼운 듯 하고 재미있는 정도가 적절하다.

Ⅴ. 연구의 시사점

이상에서 로스쿨에서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여기까지의 논의는 연구자 주관의 개입이 가급적 자제될 것이 요청되었다. 물론 연구참여자들의 진술내용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입장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25]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참여자들의 진술내용을 가급적 객관적으로 드러낸다고 하는 의미에서 개입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의 종합적 서술은 객관적 구조를 드러내려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의 문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논의이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제출된 "법사회학 강의의 본질적 구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두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강의의 개선

위의 종합적 서술은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는 강의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여기에 적힌 것을 한꺼번에 다 실천할 없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 법사회학 강의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본 연구 결과는 "법과 관련한 역사와 사회와 사상이, 학생들이 일차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현재의 한국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르치려고 애쓰"[26]는 시도를 지지한다.

또 그 반대측면을 보면,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강의의 형태의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법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이 리스트를 보면서 자신의 강의를 개선할 수 있다.[27]

---

25) 앞에서 보았듯이(II. 2. 2) 참조),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의도성 내지 방향성(intentionality)이 연구를 추동하는 동력이 되며, 그러한 한에서 연구자 주관의 개입이 필연적이고 정당화된다.

26) 김창록, 「로스쿨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법과사회』 35(2008), 19면.

27) 이러한 지점들은 그 자체가 법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강의를 평가하는 지표(indicator)가

① 학생들은 법사회학 '이론'을 알고자 하지만, 이론을 그 자체로서 아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이해에 필요한 이론이다. 그런 점에서 이론이 없이 법현실을 피상적으로 다루는 강의도 회피되어야 하며, 동시에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이론의 현재적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 이론강의, 너무 난해한 이론강의도 개선되어야 한다.

② 학생들은 법사회학 강의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법현실을 알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 구체적인 법현실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 강의는 개선되어야 한다.

③ 학생들은 법사회학 수업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을 집적하기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사고력과 자아의 '성장'기회를 갖고자 한다. 따라서 교수의 일방적인 설명이 지배하는 강의, 학생들 간의 토론이 활발하지 않는 강의, 실존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강의는 개선되어야 한다.

④ 학생들의 수업에서 '교수의 역할'에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가 수업에서 교수가 과도하게 발언하는 강의, 교수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강의,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없는 강의, 경직된 강의는 개선되어야 한다.

2. 법사회학의 독자성

위의 조사에서 드러난 현저한 특징 중의 하나는 학생들은 법사회학이 단순히 실정법학의 학습이나 응용에 이용되는 데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이들에 의하면, 법사회학은 실정법학에 부속하는 학문에 그쳐서는 안 되며, 마찬가지로 법사회학 강의에서도 실정법학의 학습이나 변호사시험에 기여하는

된다. 이를 계량화하여 측정도구로 만들면 각 교수별 강의충실지수(index)를 도출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의 것이 유용한 지표를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다.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은 앞서의 두 연구자가 제시한 제안과 다소 상치되는 지점이다. 본 연구결과는 법사회학 수업에서는 실정법학에서 다루지 않거나 다룰 수 없는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해석법학의 좁은 틀을 벗고, 자유분방한 법리를 탐구하고 법적 논변을 연마하는 것은 이미 실정법학의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8] 법사회학은 실용주의의 기치 아래에서 실정법학의 고급화·전문화에 직접 기여하기보다, 실정법학을 메타적으로 조망하고 비평하고 향도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법사회학 강의를 통해서 실정법과 관련한 실용적 지식이나 기능을 얻기보다는 그것을 초월하는 비전과 가치를 얻는 등 지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확인한 것은 본 연구의 가장 현저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든 로스쿨 학생들이 실용주의나 출세주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학생들 사이에게서 보이는 실용주의나 출세주의는 학생들보다 로스쿨 교육에 그 원인이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에서의 연구 중 몇몇은 로스쿨 교육이 학생들을 탈정치화시키고 보수화시킨다거나[29] 학생들의 정의감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30] 어떤 의미에서 본 연구는 학생들 사이에 그러한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는 또 다른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적지 않은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는 법에 대한 무비판적인 학습에 저항하고 그로부터 이탈하려는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사회학은 바로 그러한 욕망과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임무

28) 예컨대 한인섭은 이미 형법강의에서 그러한 방식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실정법 학습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인섭, 「다양한 전공, 그 특장을 융합하는 로스쿨강의 - 첫 학기의 작은 경험」, 『서울대학교 법학』 51-1(2010. 3), 330면.

29) Douglas Litowitz, *The Destruction of Young Lawyers: Beyond One L*, (Arkon: University of Arkon Press, 2006), p.49.

30) Murry L. Swartz, "How Legal Education Respond to Changes in the Legal Profession",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53(1978), p.445. 다음의 논문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Harward S. Erlanger & Douglas A. Klegon, "Socialization Effects of Professional School: The Law School Experience and Student Orientation to Public Interest Concerns", *Law and Society Review* 13(1), 1978; Susan A. Kay, "Socializing the Future Elite: The Nonimpact of a Law School", *Social Science Quarterly* 59(2), 1978.

를 부과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Ⅵ. 연구의 한계

이처럼 본 연구는 현실의 법사회학 강의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갖지만, 두 가지 면에서 중대한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교육은 단순히 학생의 요구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요구와 교수의 의도가 학생들에게 전수되는 데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생의 요구만으로 강의를 설계하는 것은 명백한 결함이 된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은 이미 매우 정확하게 법사회학을 정의하고 있으며,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강의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 드러난 학생의 요구가 단순히 무시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둘째로 지적되어야 할 한계는 소위 질적 연구의 일반화의 문제로서, 위에서 지적된 것보다 본질적인 것이다. 그것은 본 연구가 과연 학생의 요구라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다. 본 연구는 법사회학 강의를 수강한, 수강하고 있는, 또는 수강하려고 한 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이들이 얼마나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조사 참여 학생들은 법사회학을 수강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31] 더구나 조사대상이 된 학생들은 법사회학 교수에 의해서 소개 내지 추천된 학생이다. 결국 본 연구는 '2010년에 학교에 다니는, 법사회학

31) 예컨대 "사회이슈에 관심이 많은 학생", "일반평균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이 법사회학을 듣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적은 학생", "토론이나 참여를 싫어하는 학생"은 기피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미 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결론이 어느 정도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을 수강체험이 있으면서, 교수에 의해서 추천될 만한 몇몇 소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의 구조를 보여줄 뿐인 것이다. 이들의 요구에 충실한 강의가 곧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인지에 대해서 이 연구는 답을 주지 못한다. 법사회학을 수강하지 않은 많은 로스쿨 학생들은 법사회학의 실용적 응용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32]

이즈음에서 우리는 일정한 판단 내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즉 교수가 법사회학 강의를 설계함에 있어서 로스쿨에 입학한 모든 학생을 염두에 둘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법사회학을 수강할 용의가 있는 학생들을 충분히 배려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입장에 선 경우라면 본 연구결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법사회학을 기꺼이 수강하려는 이들이야 말로 한국사회와 법현실의 성장과 극복을 향한 강한 욕구를 가진 학생이며 그런 점에서 이들이야 말로 우리 사회와 법조계의 희망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주장일까? 생각건대 법사회학을 수강하기로 한 이들에게라도 우리 사회와 법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하고 그에 기반으로 하여 건전한 직업적 실천을 하게 한다면, 애써 법사회학 강의를 하는 보람이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후자에 한 표를 보태고 싶은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미영,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서술」, 『한국사회복지학』 56-1, 2004.2.

고봉진, 「기초법의 교수방법론」, 『법철학연구』 11-2, 2008.

김도현, 「실무법학교육과 기초법」,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32) 과연 그러한지 여부에 대해서 양적 연구를 통래서 검증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후속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올바른 로스쿨 정착을 위한 후속과제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2007.7.20.

김성훈, 신주화, 하정미,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노년학』 30-1, 2010.

김재원, 「미국로스쿨의 법학교육방법: Case Method에 관한 오해와 이해」, 『법철학연구』 9(2), 2006.

김창록, 「로스쿨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법과사회』 35, 2008.

신충식, 「질적 연구방법과 현상학」, 『사회과학』 42-1, 2009.

유혜령, 「교육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의 성찰과 연구기법의 문제」, 『아동교육』 18-1, 2009.

존 크레스웰, 조흥식 등 옮김, 『질적 연구방법론』, 학지사, 2005.

한인섭, 「다양한 전공, 그 특장을 융합하는 로스쿨강의－첫 학기의 작은 경험」, 『서울대학교 법학』 51-1, 2010.3.

Hatch, J. Amos, 진영은 옮김, 『교육상황에서 질적 연구 수행하기』, 학지사, 2008.

Erlanger, Harward S. & Douglas A. Klegon, "Socialization Effects of Professional School: The Law School Experience and Student Orientation to Public Interest Concerns", *Law and Society Review* 13(1), 1978.

Flick, Uwe,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 2002.

Kay, Susan A., "Socializing the Future Elite: The Nonimpact of a Law School", *Social Science Quarterly* 59(2), 1978.

Litowitz, Douglas, *The Destruction of Young Lawyers: Beyond One L*, Arkon: University of Arkon Press, 2006.

Swartz, Murry L., "How Legal Education Respond to Changes in the Legal Profession",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53, 1978.

[부록] 설문지

법사회학 강의 관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은 로스쿨학생들이 로스쿨에서 개설되는 법사회학 강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또는 있었는지), 실제 수강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로스쿨에서 법사회학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설문의 내용은 오직 학술적인 방식으로만 이용될 것이며, 사적인 견해나 정보는 연구자 이외 누구에도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을 보시고, 생각나는 것을 담백하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잘 다듬거나 체계적으로 서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최소 2-3쪽 정도면 좋겠습니다.

1. 왜 법사회학 강의를 수강하고자 했습니까? 다음 점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회학을 수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본인이 생각한 법사회학은 무엇이었습니까?
법사회학 강의에서 본인이 특히 배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등등

2. 법사회학을 수강하고 난 후에 든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음 점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사회학을 수강한 바가 없으면, 이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강중이면 현재까지의 경험을 쓰면 됩니다.)

이번 법사회학 수강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법사회학 수강에서 다소 미진했다고 생각된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등등

3. 향후 법사회학 강의가 열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법사회학 교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외 법사회학 강좌와 관련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답변자: 나이:____세, 성별: 남/여
답변은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soogong@gmail.com
연구책임자: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 000-0000-0000

<Abstract>

The Preferred Structure of the Class of Sociology of Law among Law School Students

—Using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Method—

Lee, Sang-Soo*

With in mind the current issues on the right ways to teach sociology of law(SL) in law school, this article tries to show the structure of SL class which is preferred by law school students.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provide the SL professors with some implications in deciding what and how to teach in SL classes, though admitting that not every SL class should succumb to the students' needs.

The methodology adopted in the research is so-called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which pursues the structure of phenomenon by grounding on and transcending from the obviousness of the life-world. I began my research with collecting raw materials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with 14 law school students, and then from the materials I drew out meanings, sorted them into the theme categories and finally made an exhaustive description of the preferred structure of SL class. The exhaustive description was sent back to all the participants(interviewees) so that they could comment on and verify the contents.

This article finds that there exists a common structure of SL class which is preferred by law school studen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objective and the method of SL classes.

* Professor, Sogang University Law School

According to the research, students want to reach a theoretical or critical understanding of law through discussions among themselves in SL class, rather than to enhance technical knowledges or law-related practical skills. They want the professor of SL to remain as a facilitator of the discussion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somewhat surprising because most professors, including myself, expected that law school students are so concerned about passing bar examination and future jobs as not to be interested in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society.

While it may be difficult to presume that all the law school students agree with the findings of this qualitative research, still it should be recognised as a matter of fact that there exists a common understanding on the recommendable structure of SL class among many law school students. The findings should not simply be ignored in organizing lectures on SL, which means that a lot of changes in current syllabuses of SL in law school are inevitable.

[Key Words] sociology of law, lecture(clas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law school, education

접수일 : 2011. 4. 1, 심사일 : 2011. 4. 5~4.12, 게재확정일 : 2011. 4.20